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33-14

NARS 현안보고서 제200호 2013. 11. 7.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정치 · 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현안보고서 Vol. 200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정치 · 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승현(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13. 11. 7.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요 약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고 미래의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이다.

연구방법은 주로 “문헌분석”에 의존하며, 정부가 발표한 관련 정책, 남북경협 관련 연구, 그리고 역대 정부의 정책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미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5·24조치에 대한 재검토와 북한으로부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는데서 남북경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5·24조치와 관련하여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거시적인 측면에서 박근혜정부는 한민족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고민을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현 단계의 남북경협을 고려할 때, 가까운 시일 내에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와 같은 정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추동력을 얻고 남북관계가 활성화될수록 이와 같은 고민은 구체적인 정책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남북경협의 성패는 경협의 순조로운 진행과 수익의 발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개선방안과 방향들을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경협의 원칙적 문제의 결정, 그리고 5·24 조치에 대한 검토와 완화 혹은 해제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기적으로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경협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짜야할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반

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와 상품무역위원회를 한·미가 이미 시작하였다.

장기적으로는 남북간의 화해협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기본틀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환경변수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내적으로는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문제를 적극적이면서 체계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를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본 보고서는 잠정적이지만 몇 가지 결론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은 우선 남북간의 관계회복 혹은 신뢰회복의 단계를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려면 과거 정부 시기에 제기되었던 '퍼주기 논란'을 극복하는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발상을 해 본다면, 박근혜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해소하는데 유리한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 퍼주기 논란을 제기했던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작을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확대하려면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준수, 남북 교류협력법,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 등 관련법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런데, 남북관계가 정체되고 있는 현 상황은 기존의 법과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이 본격 가동될 경우, 남북경협은 현상유지의 힘 보다는 현상타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정부의 남북경협 활성화라는 정책의지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남북한 경제 분단은 '차단'의 가능성 보다는 '소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 결과는 작은 통일로서의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과 큰 통일로서의 정치공동체로 나아가는 초석으로 나타날 것이다.

차 례

□ 요약

Ⅰ. 머리말 / 1

Ⅱ. 남북경협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 4

1. 개념, 목표, 원칙 ····· 4

2. 추진경과 ····· 7

3. 남북한 통일과 경협의 이론적 배경 ····· 9

Ⅲ. 남북경협의 현황 / 11

1. 개성공단 현황 ····· 12

2. 금강산 관광 현황 ····· 16

3. 5・24 조치와 남북경협 ····· 18

Ⅳ. 외국사례 / 21

1. 동・서독 사례 ····· 21

2. 중국・대만 사례 ····· 23

3. 시사점 ····· 27

Ⅴ. 주요 쟁점 / 31

1. 역사적 기술 ····· 31

2. 원칙 ····· 34

3. 현안 ····· 37

Ⅵ. 개선 방향 / 43

1. 단기 ····· 43

2. 중기 ····· 44

3. 장기 ····· 45

Ⅶ. 맺음말 / 47

□ 참고문헌

표 차 례

[표 1]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 12
[표 2]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 13
[표 3]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 14
[표 4] 남북교역액 현황 ····· 20
[표 5] 역대 정부별 경협의 쟁점 ····· 33
[표 6] FTA에서 개성공단 특례 비교 ····· 41

그 림 차 례

[그림 1]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개략도 ····· 6
[그림 2]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도(파주사례) ····· 15

Ⅰ. 머리말

□ 박근혜정부는 ‘신뢰’를 키워드로 하면서, 남북경협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신중하지만 차분하게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6자회담 진전과 병행하여 남북경협 정책을 구체화하고 활성화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고, 국회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미가 개성공단과 관련된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을 의제로 협의를 시작하는 등 남북관계 기류 전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조만간, 박근혜정부가 남북경협 문제를 중요한 현안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는 판단을 바탕으로, 남북경협의 현황을 정리하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는 것이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임

○ 본 보고서의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활용할 것이며, 분석대상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남북경협과 관련한 전문가의 관련 연구, 역대 정부의 정책 등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할 것임

□ 지금까지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시각이 공존하고 있음

○ 긍정적 평가로는 남북경협은 한민족경제공동체 형성의 출발점이 된다는 입장임

- 첫째, 남북경협은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 5단계 중 1단계
- 둘째, 남북경협은 한반도 긴장과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
- 셋째, 남한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음

○ 부정적 평가로는 남북경협은 “퍼주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임

- 첫째, 핵, 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 둘째, 북한 김정일 정권의 체제 유지 비용으로 활용
- 결국, 남북경협은 북한 독재체제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역할에 불과함

□ 남북경협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당위적 차원의 이유

○ 한국의 경제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이를 넘어설 돌파구가 필요함

- 콘퍼런스보드[1]가 2012년 11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2025년께 최악의 경우 0%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함
- 한국도 앞으로 10년 이상 계속될 세계 경제의 장기 저성장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
  - ◆ 이 보고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음
  - ◆ 긍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때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13~2018년, 2019~2025년 각각 3.4%와 1.9%로 잡았음
  - ◆ 비관적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13~2018년과 2019~2025년 각각 1.5%와 0.5%로 조사 대상 55개국 중 52번째로 높지 않음
  - ◆ 이러한 상황을 돌파하는 실마리를 찾는데 남북경협의 성공이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

1) 미국의 민간 연구소의 하나로 기업 경제활동에 대한 신뢰할 만한 통찰력을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활동하고 있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conference-board.org/ 참조.

○ 규모의 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실용적인 이유가 있음

-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규모와 경제규모는 점점 더 중요해짐

◆ 높은 무역 의존도가 한국 경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 무역의존도가 높고 내수가 취약한 한국은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30%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가장 높은 반면, 내수 비중은 GDP 대비 52.93%로 G20 중 17번째로 상대적으로 볼 때 매우 낮은 수준임

◆ 한국의 인구는 4862만명(26위)이며, 북한 인구(2460만명)를 합치면 7320만명으로 19위 수준임. 남북경협을 확장하고, 연변 등 동북삼성의 조선족까지 포괄하는 “한민족 경제권”을 형성하면 오래지 않은 시간 내에 한국어를 사용하는 1억명의 시장규모를 달성하는 것도 가능함

◆ 1억명은 내수로 자기 완결적인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최소 규모로 평가되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남북한 그리고 동북삼성의 조선족을 포함하는 경제공동체 건설이 당위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될 시기가 올 수 있음

Ⅱ. 남북경협의 개념과 이론적 배경

1. 개념, 목표, 원칙

가. 개념

□ 남북경제협력(이하 남북경협)이란 일반적으로 남북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남북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을 총칭함.[2] 남북경협은 크게 상업적 거래와 비상업적 거래로 구분할 수 있음

○ 상업적 거래는 일반교역, 위탁가공교역, 협력사업 등으로 구성됨

- 일반교역은 외환의 지급 등 실질적인 대가의 지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임
- 위탁가공교역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공급하여 이를 가공하게 한 후 가공물품을 반입하는 교역을 뜻함. 5.24 조치에 의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형임.
- 경제협력사업은 일반적으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기타경제협력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비상업적 거래는 대북지원과 사회문화협력사업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경제협력을 지칭 함

-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비료, 그리고 건설장비 등을 비상업적인 거래라 부를 수 있을 것임

2) 이영훈, 「남북경협의 현황 및 평가」, 『금융경제연구』, 2006; 이종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기반 구축 현황」, 『북한경제논총」, 북한경제포럼, 2006.

나. 목표

□ 남북경협의 목표는 위험관리, 한국경제의 발전, 그리고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임[3)]

○ 남북경협을 통한 한반도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음

다. 원칙

□ 남북경협의 원칙[4)]은 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호주의, 상혜(商惠)분리를 기본으로 함

○ 정경분리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남북관계의 정치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는 원칙임. 남북경협을 유지하는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켜나가기 매우 힘든 원칙임을 최근 15년의 남북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음

3) 목표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양문수, 「차기정부의 남북경협정책 방향」,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2012. 11. 13), p.2 참조.

4) 양문수는 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호주의라는 견해이며, 홍순직은 정치와 경제의 분리, 정부와 민간 사업 분리,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의 분리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음. 『남북경협의 미래와 과제』 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 2012. 11. 5.

[그림 1]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협력 개략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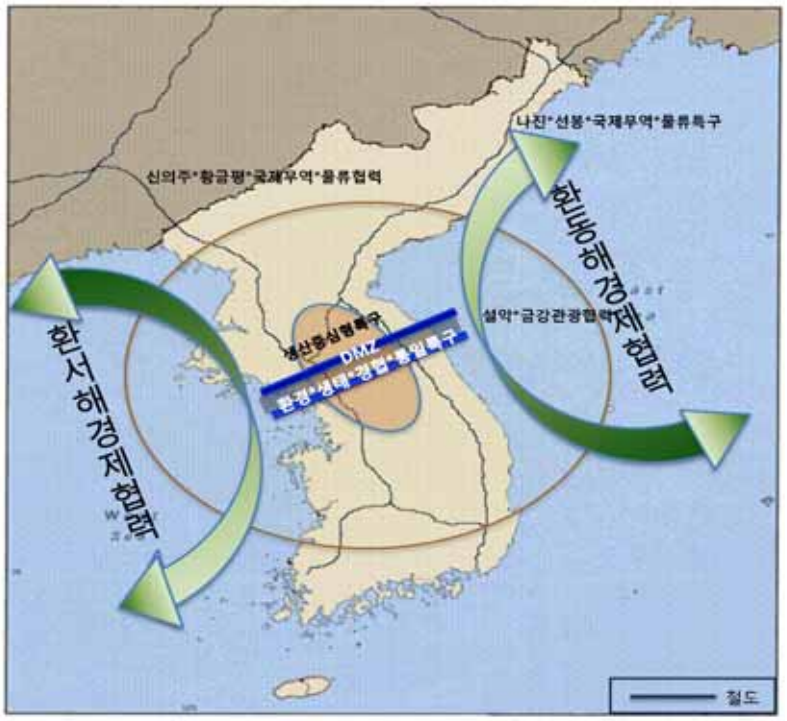

자료: 이상준 외,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안양, 국토연구원, 2008, 양문수, 앞의 글, p. 8을 바탕으로 재작성.

○ 민관분리는 사적 계약에 근거한 민간의 경제활동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정부간 경제거래를 분리하자는 것임. 민관분리 개념은 북한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개념이라 할 수 있음. 북한은 민관분리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측의 민간차원의 경제활동과 정부차원의 경제지원 등을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상호주의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을 호혜평등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행하자는 것임. 남북한이 모두 경제적으로 수익을 내고 윈-윈(win-win)하기 위해 필수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음

○ 상혜분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거래와 이윤과 관계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행하는 지원을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임. 특히 북한 측에서 이러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2. 추진경과

□ 1988년 노태우 정부의 7.7선언으로 남북간 경협이 공식적으로 시작됨[5)]

○ 제도적으로는 1990년 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남북경협을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일반교역 → 위탁가공 → 투자사업의 순서로 발전하였음

□ 2000년 김대중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 당국간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개성공단(기반시설), 경공업・지하자원개발협력 등을 추진함

○ 특히 2003년 8월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중재,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및 2005년 10월 개소한 남북경제협력협의 사무소는 남북경협의 제도화에 있어서 큰 진전이라 할 수 있음

○ 북한도 2005년 6월 장관급 전담기구인 「민족경제협력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북남경제협력법」을 제정한 바 있음

5) 황부기, 「남북경협 평가와 과제」,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세미나, 2012, p.17.

□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긴장고조 행위는 경협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

○ 2차례 핵실험(2006년 10월, 2009년 5월) : 안보리 결의 1718·1874호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유발함

○ 금강산 관광객 피격(2008년 7월): 관광을 잠정 중단함

○ 천안함 사태(2010년 3월): 남북경협을 잠정 중단함(5.24조치)

○ 북한 제3차 핵실험 강행(2013년 2월 12일)

○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함(2013년 4월)

○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2013년 6월)

○ 개성공단 조업 재개(2013년 9월)

□ 박근혜정부의 입장[6)]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과거의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고 진화된 대북정책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북한에 대한 퍼주기 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며,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

○ 북한에 대한 압박 일변도 정책의 부작용을 인정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놓았고 그 결과 개성공단 재가동의 성과를 얻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6) 왕선택, 「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YTN』, 2012년 12월 22일자. http://www.ytn.co.kr/_ln/0101_201212220506093254

3. 남북한 통일과 경협의 이론적 배경

□ 남북통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구분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음

○ 첫째, 정치・군사적 접근법임. 정치적 타결을 통해 일거에 통합 하거나 군사적 수단을 통해 물리력으로 일방을 제압하여 통합하는 방법이 있음. 북한은 주로 정치군사적 접근에 근거한 주장을 지속해 온 바 있음

○ 둘째, 기능주의적 접근법이 있음.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려운 정치분야로부터 실마리를 찾지 않고, 비 정치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여 상호의존적인 영역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정치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임

○ 사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경협정책은 본질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기능주의적 접근법으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음

□ 남북경협의 경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면 “자동적”으로 정치적 협력으로 발전한다는 기능주의, 그리고 기능주의의 한계를 보완하여 나온, 신기능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시도되었으며 현재도 동일한 맥락에서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노태우 정부가 기능주의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시도해 나아가던 중, 북한이 1993년 NPT 탈퇴선언을 하면서 경색국면으로 회귀하였음

○ 국민의 정부 등장이후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고 정치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지속하겠다는 “햇볕정책”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하면서 기능주의 접근이 다시 시도 된 바 있음

□ 거시적으로 볼 때 남북경협의 핵심적인 논리를 기능주의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정리할 수 있음

○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이 비 경제적인 영역으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아래 남북경협을 추진해 왔고 현재도 그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경제협력을 통해 평화를 이룩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가 남북경협의 바탕에 자리 잡고 있음

Ⅲ. 남북경협의 현황

□ 박근혜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언급[7]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장관에게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한·미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협의하기 시작하는 등 남북경협을 둘러싼 환경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음

□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가장 대표적인 경협사업이며,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개성공단 관련 경협 사업이외에는 새로운 경협이 추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음. 가장 대표적인 경협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그리고 5・24 조치 전후를 중심으로 경협의 중요 현황을 정리하였음

□ 연도별 협력사업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2011년~2012년에 남북 민간경협의 승인 건수가 최저를 기록하였고, 2013년 들어 승인 건수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개성공단의 경우는 2009년 이후 승인 건수가 급격히 하락한 이후 현상 유지 상태임

7)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보여준 반응
- 2013년 11월 2일: 남북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르 피가로)
- 2013년 5월 7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워싱턴포스트)

[표 1]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현황

(단위 : 건)

구 분			'91~'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계
경제	민간경협		3	6	0	2	5	1	2	6	10	4	6	9	1	19	-	-	14	88
	개성공단	승인	-	-	-	-	-	-	-	17	26	15	163	53	10	6	1	6	3	300
		신고	-	-	-	-	-	-	-	-	-	-	-	-	12	11	18	21	7	69
사회문화			3	5	5	4	6	7	13	16	47	26	19	3	-	1	1	-	-	156
계			6	11	5	6	11	8	15	39	83	45	188	65	23	37	20	27	24	613

※ 협력사업 신고제 시행('09.7.31) : 경제개발 특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총금액 50만달러 이하인 사업

1. 개성공단 현황

□ 개성공단은 2013년 3월 13일 기준으로 123개의 기업이 가동 중이었으나, 2013년 3월 8일 조업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으며, 2013년 9월 16일 재가동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음

○ 개성공단 조업 중단 사태 및 재개 일지

- 2013년 3월27일 개성공단 입출경 채널·남북간 군 통신선을 차단함
- 2013년 3월30일 북한의 "존엄 훼손시 개성공단 폐쇄"하겠다고 발표함
- 2013년 4월3일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하고 입경만 허용하겠다고 통보함
- 2013년 4월8일 김양건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비서의 개성공단 방문 이후 개성공단에서 조업중인 북한측 근로자 전원 철수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함

- 2013년 4월9일 조업중단
- 2013년 9월 16일 재가동
- 2013년 9월 30일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업무 개시
- 2013년 10월 남북한 공동으로 국내, 외국 투자자들을 상대로 개성공단 투자 설명회를 열기로 계획했으나 무기한 연기
- 2013년 10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 21명 개성공단 방문
- 2013년 11월 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 “외국 기업의 개성공단 투자는 5·24 조치와 충돌하지 않지만 국내 기업의 신규 투자는 충돌한다”고 언급함

□ 2005년 1월부터 2012년 12월말까지 생산액 누계는 약 20억달러임.[8] 그간 생산액 추이를 보면 남북관계의 경색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에 월 2천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3천만달러~4천 4백만 달러사이에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표 2] 개성공단 가동기업수 및 생산액 현황

(단위 : 개, 만달러)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가동 기업수	18	30	65	93	117	121	123	123	-
생산액	1,491	7,373	18,478	25,142	25,648	32,332	40,185	46,950	197,599

□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근로자는 2009년 9월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선 이래, 2012년 12월 기준으로 5만 3천여명에 이르고 있음. 개성공

8) 통일부 홈페이지 (최종 검색일, 2013.11.03.) <www.unikorea.go.kr>

단 입주기업들이 주로 의류, 봉제 등 경공업 분야이고, 여성근로자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개성인근의 통근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여성근로자들은 거의 다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있음. 향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서 노동 수요가 발생할 경우 개성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노동력 유입이 불가피 함. 즉 개성공단 내에 근로자 숙소로 사용할 아파트 건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3] 개성공단 근로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북측 근로자	6,013	11,160	22,538	38,931	42,561	46,284	49,866	53,448
남측 근로자	507	791	785	1,055	935	804	776	786
합계	6,520	11,951	23,323	39,986	43,496	47,088	50,642	54,234

□ 통일특구・평화특구 구상과 개성공단의 미래

○ 남한에서는 개성공단의 단계적 확장과 동시에 개성공단과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통일특구・평화특구 개발 구상도 발전시키고 있음

[그림 2] 통일경제특구 개발 구상도(파주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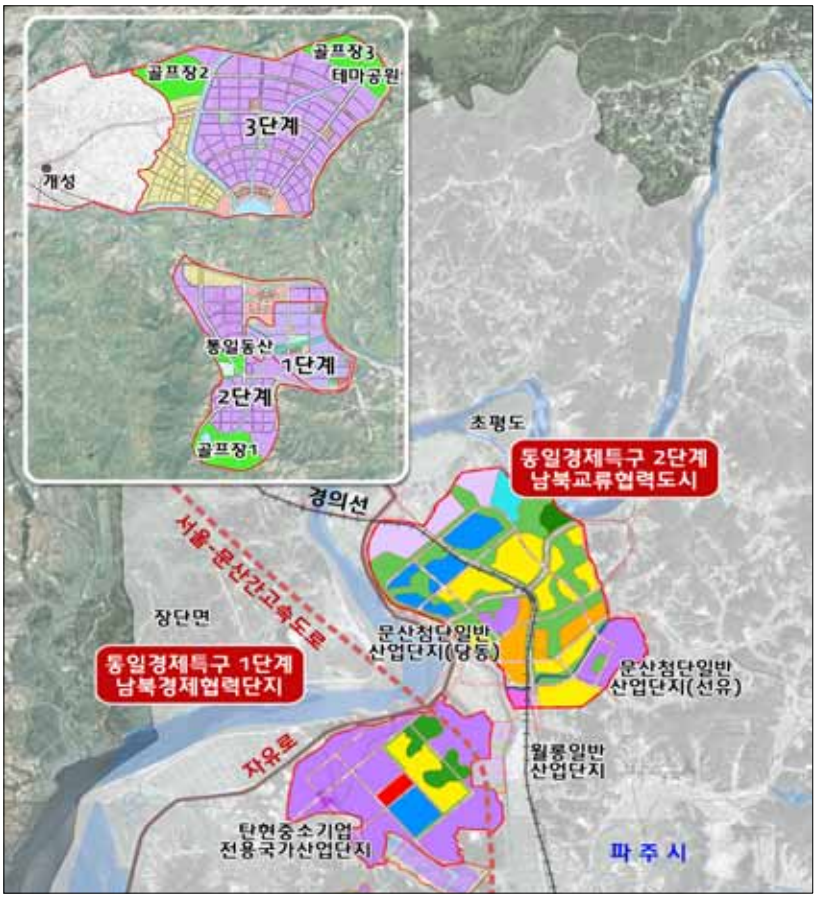

자료: 신종호외,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방안 연구』,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2012, p.136.

○ 이러한 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은 개성공단의 발전과 한계로부터 찾아볼 수 있음

- 개성공단의 문제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해결하면서 개성공단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통일특구·평화특구를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둘을 통합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하려는 구상임

2. 금강산 관광 현황

□ 금강산 관광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을 계기로 중단되어 현재까지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최근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한이 협상을 개시하기 직전까지 진전이 있었으나 다시 불발됨으로써 앞으로도 상당기간 재개되기 어려운 상황임

□ 1998년 6월 16일~6월23일 정주영 명예회장 일행이 판문점을 통과하여 방북(소 500마리 포함)함으로써 계기를 마련함

□ 1998년 10월 29일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간「금강산 관광사업에 관한 합의서」및「관광사업대가 지불에 관한 합의서」등을 체결

○ 1998년 11월 금강산 해로관광 실시

○ 2003년 9월 육로관광 실시

○ 2007년 6월 내금강 관광 실시. 1998년 11월 관광시작 이후 2008년 7월 11일 까지 총 193만 4,662명이 금강산을 관광

○ 2008년 3월 17일 금강산 승용차 관광 실시

○ 2008년 5월 28일 금강산에 골프장을 개장

□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故 박왕자씨 피격사망

○ 7월 12일 관광 잠정 중단

○ 8월 20일 이후 금강산지구 상주인원 200명 이내 유지(8월 9일 북측 통보)

○ 12월 4일 이후 금강산지구 상주인원 100명 이내 유지(11월 26일 북측 통보)

□ 금강산 관광대가에 대한 지급방식도 변화가 있었음

○ 첫해 6개월간 월 2,500만달러(총 1억5천만달러), 이후 9개월간 월 800만달러(총 7,200만달러), 이후 5년간 월 1,200만달러(총 7억 2천만달러)를 지급하였으며, 합계 9억 4,200만달러를 지불하였음

○ 지급방식을 보면, 1998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는 정액식이었으며, 2001년 6월에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2006년 5월까지는, 해로 관광의 경우 1인당 100달러, 육로관광은 2박3일 50달러, 1박2일 25달러, 당일 10달러로 하였음

○ 2006년 7월부터 현재까지는 1인당 2박3일 80달러, 1박2일 48달러, 당일 30달러, 그리고 내금강은 22달러로 하였음

□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에 남측이 소유한 부동산 현황을 조사하고 이중 일부에 대한 동결조치, 남측 관리 인원의 추방, 관광사업자 변경에 관한 내용, 새로운 법의 제정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의 재개를 압박하고 있음

□ 남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회담을 합의하였으나 불발에 그쳤음.

○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이 서유럽 순방에 앞서 가진 르 피가로(Le Figaro) 지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김정은 제1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남북관계 기류 전환의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음

○ 남북간의 화해협력 기류가 형성될 경우 금강산 관광 재개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3. 5·24 조치와 남북경협

□ 현재 남북경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부 조치로는 5·24 조치가 있으며 그 시행과 폐기에 대한 논란이 있음

○ 5·24 조치의 발표 배경

- 북한에 대해 천안함 공격의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2010년 5월 24일 발표[9]한 것이 5·24 조치였음

○ 5·24 조치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남북교역 중단, 신규투자 및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대북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임. 한편, 법원은 「5.24조치」를 일반 행정작용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판시(서울중앙지법, 2011년 11월 17일)한 바 있음

□ 정부는 「5.24조치」에 따른 각 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해운합의서(2004년 12월 국회 동의)에 근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방북 불허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9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교역 중단, 협력사업 금지, 지원 보류조치는 남북교류협력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

○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조치는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제1조제9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근거에 따라 법집행을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대북 송금과 관련하여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의 현안이 발

9)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통일부, 「5.24조치 2주년과 남북교류협력」, 2012. 5.23 참조.

생한 바 있음

□ 5.24 조치 이전 남북경제교류 현황

○ 5.24 조치 이전과 이후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위탁가공의 금지, 기업의 신규진출 및 투자확대 불허조치 등 경제교류와 협력의 위축이라 할 수 있음

○ 5.24 조치 이전인 2010년 까지의 경제교류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음

□ 남북교역액은 1989년 교역을 시작한 이래로 연평균 25.5%의 성장률(반입 19.0%, 반출[10] 36.0%)을 보이고 있음

○ 남북 물자교역은 1988년 7.7 선언 당시 2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이 1991년 1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1997년에는 3억 달러를 넘어 섰고, 이후, 한국의 IMF 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으나, 1999년 다시 3억 달러, 2000년 4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 달러를 넘어섰음

○ 2007년에는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수요, 6자회담 합의 이행의 대내외적 화해 분위기 속에서 전년대비 33.2% 증가한 17억 9,789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급상승한 양상을 보였음. 이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생산품 반입증가 및 북한산 농수산물·광산물 반입 증가 등 상업적 거래가 대폭 늘어난 데 따른 것임

○ 이와 같은 지속적인 성장세 속에 5·24 조치 등 남북관계의 조정국면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남북 간의 교류협력도 일시적으로 위축되었음

10) 반출 연평균성장률은 1989년도에 반출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1990년~2011년 기간으로 계산한 조동호의 견해를 수용함.

- 그 추이를 보면, 2009년 남북교역액은 2008년 18억 2,036만 달러에 비해 7.8% 감소한 16억 7,908만 달러를 기록하였음. 2010년 다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음

[표 4] 남북교역액 현황

(단위 : 백만달러)

구분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합계
반입	19	12	106	163	178	176	223	182	193	92	122	152	
반출	–	1	6	11	8	18	64	70	115	130	212	273	
합계	19	13	112	174	186	194	287	252	308	222	334	425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반입	176	272	289	258	340	520	765	932	934	1,044	914	1,074	9,137
반출	227	370	435	439	715	830	1,032	888	745	868	800	897	9,155
합계	403	642	724	697	1,055	1,350	1,798	1,820	1,679	1,912	1,714	1,971	18,292

자료 :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 동향(2013.1)』, p.7.

○ 남북교역 품목수는 2010년 795개에서 2011년 702개로 93개 품목이 줄었고, 일반교역·위탁가공은 2010년 3억 3,400만 달러에서 2011년 400만 달러로 감소하여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북지원도 2010년 404억 원에서 2011년 196억 원으로 줄었들었음. 여기에 북한선박 운항금지로 선박운항횟수는 2010년 1,432회에서 2011년 142회로, 선박물동량은 106만 톤에서 2천 톤으로 대폭 축소되었음

Ⅳ. 외국사례

□ 남북경협과 같이 이질적인 경제체제간의 협력 경험으로 참고할 만한 외국사례는 동·서독간 경제협력과 중국·대만간 경제협력이 있음

○ 동서독 사례는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참고하였던 경우이며, 중국·대만간 사례는 남북한간의 경제협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는 점이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국·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 (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이하 ECFA) 체결에 주목하고, 양안관계 발전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남북경협에 적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동서독 사례와 중국·대만간 경협 사례가 주는 핵심 시사점은 이질적인 체제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라 할 수 있음

1. 동·서독 사례

□ 독일의 분단은 한반도의 분단처럼 차단이 엄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독일 사이에는 연합국의 점령시절부터 경제교류가 있어 왔음

□ 동서독의 초기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서독은 동독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동독과 경제적 교류를 하였으며,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국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경제적 교류를 통하여 "국가"로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고, 또 서독이 동독에 대해 취하고 있는 고립화정책에서 탈피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음

□ 서독지역은 구독일제국의 중공업지역이었고 미국의 대(對) 서독 부흥정책인 “마샬플랜”에 의해 경제적 부흥이 쉬웠기 때문에 동독보다 경제적 우위에 설 수 있었으나, 동독은 공업을 발전시켜 나갈 자원이 거의 없었고 또 서방국가들로부터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동독은 동서독 경제교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고 했음

□ 1945년 전후 미・영・프・소가 독일을 점령한 후, 서방 3국 점령지역과 소련 점령 지역 간에 각각 물품교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간 교류가 있었으나, 1948년 6월 14일 베를린 봉쇄로 경제교류가 중단되었음. 그러나 1949년 두 독일에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양독 간 경제교류는 다시 재정립의 단계를 맞게 됨

□ 정부수립 후 최초의 양독 간 경제교류를 위한 지불방법 및 청산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1949년 10월 8일 「프랑크푸르트협정」을 맺었으며, 1951년 9월 20일 제3차 「베를린협정」에서는 상품거래, 용역거래, 청산거래와 기타 제반 결정사항에 관한 지침에 합의하였음

□ 1957년 3월 25일 체결된 유럽공동체(EC)의 설립에 관한 조약문에서 서독 측의 요구에 의해 유럽공동시장가맹국들이, 양독교역은 외국간의 교역이 아니라 독일내부의 교역이며 조약당사국들은 동독을 제3국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넣어 동독물품의 서독반입 시 관세를 면제해 주었음. 동독은 서독 덕택에 사실상 EC역내시장의 대접을 받으므로 수출에도 상당히 유리했음

○ 서독이 동독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석유제품, 섬유류, 농산물, 의류 등원료 또는 원제품인데 비해, 동독이 서독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화학제품, 기계류, 자동차 등 완제품 또는 가공품이 많았음

□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의 체결로 양독 간 경제교류의 절차가 상당히 간소하게 바뀌고 양도 증가함. 특이한 점은 동서독 간 교역이나 물품거래가 대부분 서독보다 동독에 유리하였지만, 서독은 이점에 개의치 않고 계속적으로 교류를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을 '독일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음. 서독의 對 동독정책의 기본 목적이 동독국민의 삶을 보다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지 결코 서독의 경제상의 문제로 그 돌파구를 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

□ 서독이 개발도상 국가들에게 원조해 주면서도 같은 민족국가인 동독을 돕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서독은 동독에 대해 매년 상당한 액수의 무역신용기금을 비롯한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였으며, 동독은 이에 대한 답례로 동독주민의 서독이주허용, 가족방문확대 등의 편의를 제공함

□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서독은 분단 이래 통일이 될 때까지 꾸준히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서독은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양독간의 신뢰를 깨지 않도록 정책의 기조를 유지해 왔음

□ 또한, 동독의 경우 서독과 합의 사항에 대하여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행하려 하였고 합의한 이후에는 이를 준수하려 하였음. 즉, 협상 상대자로서 동독은 서독과의 신뢰를 깨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음

2. 중국・대만 사례

□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의 확대를 통해서 무역 이득을 취득하고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기술・경영기법의 도입 및 고용확대

효과를 취함과 동시에 경제적 상호 의존성의 제고를 통해 궁극적으로 통일로의 진전을 도모하고자 함

○ 1979년 이후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대만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으므로 이를 위해 대만과의 경제교류 및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바 있음

□ 대만의 대 중국 경제무역활동은 "엄격한 제한"에서 점차 완화되어가고 있는데, "금지"→ "묵시적 허용"→ "완화"→ "규범화"의 4단계의 변화가 있었음

□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분야에서는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당국 간 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체결한 합의서는 현재까지 없음

○ 특히 당국자 간 접촉의 부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단일한 양안관계법이나 협정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

□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개 성(省)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상호 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과 대만간의 이와 같은 근본적인 입장 차이는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음

○ 특히 당국간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반

관반민”의 “해협회”와 “해기회”가 당국을 대리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양측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양안간의 형사범죄인 송환, 공증서 사용 및 조사, 등기우편의 조사와 보상 등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기도 하였음

- 이 두 기관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ECFA를 체결한 것임

□ ECFA를 체결한 양안의 경제교류 사례와 남북한 경제교류 사례는 이질적인 경제체제를 운용하는 분단국간의 경제교류라는 점에서 상호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음

○ 양안의 경제관계와 남북의 경제관계를 큰 틀에서 특징을 비교하였음

□ 양안 경제교류와 남북경제교류의 특징 비교

○ 양안의 경제교류는 이념보다는 실리에 바탕을 두었음.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명분과 이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

○ 명분이나 이념보다는 실리에 바탕을 둔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경험은 명분과 이념을 강조하면서 오랜 경색국면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정경분리

- ‘대만독립’ 및 ‘통일’을 둘러싼 정치・군사적 갈등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非정치분야(경제・사회・인적교류 등)의 교류는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경분리 정책을 유지함

- 남북한은 정경연계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경색국면을 가져왔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협력이나 사회・문화 분야 교류에서 ‘모멘텀’ 유지가 중요함. 즉,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경제・사회 영역

은 어떤 식으로든 교류협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반관반민

- 현재까지도 중국·대만의 양안 간 공식 접촉은 없었기 때문에,[11] 중국과 대만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함
  - ◆ 상대방 역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고 승인함으로써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함
- 특히 중국과 대만은 경제·사회·문화 등 민간 분야에서 이루어진 방대한 규모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해협양안관계협회'와 '해협교류기금회' 같은 반관반민 성격의 기구가 정부당국을 대리하도록 하여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양측 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을 모색함
  - ◆ 2010년의 ECFA 역시 해기회와 해협회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됨
- 남북한 역시 향후 반관반민 형태의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정부 간 교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효율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음
  - ◆ 특히 중국·대만은 양측의 타협이 불가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양보와 포용 및 실리적인 협상태도(先易後難, 求同存異, 實事求是)를 견지했는데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접경지역 특구 개발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 중국과 대만은 접경지역 특구 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확

11) 중국과 대만의 당국자 간 공식적인 접촉 부재로 인해 공식적인 협상을 통한 구속력 있는 단일한 양안관계법이나 협정체결은 전무함.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23개 성(省)의 하나로 인식하는 반면 대만은 중국과 상호대등한 정치적 실체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임.

대함

- ◆ 대만은 2000년 「리도건설조례(離島建設條例)」를 제정하여 낙후되어 있는 진먼(金門島), 마주(馬祖島)의 개발을 지원하였음
- ◆ 중국은 2009년 푸젠성(福建省) 해협서안경제구(海峽西岸经济区)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대만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였음

- 남북한 역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통해 지자체의 대북교류협력 권한 및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인도적 지원 사업의 경우 지자체에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압도적인 경제력 차이

- 중국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대만에게 ECFA라는 시혜적인 협정을 체결한 것이며, 상호간의 경제교류의 결과 장기적으로 대만 경제가 중국경제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음
  - ◆ 남북간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유사한 경로를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임

3. 시사점

□ 종합적으로 볼 때 동·서독의 경제협력이나 중국·대만의 경제협력은 남북한의 경제협력 사업에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이기는 하나 직접적으로 제도를 차용하여 적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제한적인 수준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사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동서독 사례나 양안관계에서 볼 수 있는 '신뢰'의 구축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로부터 박근혜부 남북경협 정책의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중국과 대만이 남북한보다 훨씬 늦게 남북교류를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발전을 보인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한 바 있음[12)]

○ 특히, 중국과 대만이 ECFA 체결을 통해 비약적으로 양안관계를 증진시킨 점에 주목하고 이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현재의 남북관계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신뢰를 기초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은 위에서 살펴본 동서독 경험이나 양안관계 경험에서도 타당성이 입증되고 있음

□ 동서독 경제교류가 남북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 서독이 주도하여 "양독교역은 외국간의 교역이 아니라 독일내부의 교역"임을 주장하고 인정받음으로써 관세를 면제받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동독은 사실상 EC역내시장의 대접을 받을 수 있었음

- 이 점은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게 하는 등 개성공단 국제화 과정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동서독의 경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동・서독 경협의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보수적인 정당이 집권하였을 때 통일을 추진하여 성공하였음

12) 최대석, 「박근혜 후보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 교류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2012. 11. 13, p.4.

- 박근혜정부도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남북관계, 통일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잠재적인 역량을 갖고 있음

□ 양안 경제교류가 남북경제교류에 주는 시사점

○ 첫째, 중국과 대만은 소위 '정경분리(政經分離)'를 통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교류협력의 경험을 축적하였음

○ 둘째,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협의 기구가 중국과 대만당국을 대신하여 교류협력 관련 문제를 협의하고 결정하였음. ECFA 역시 해기회(海基會)와 해협회(海峽會)라는 반관반민 기구 간 협의를 통해 체결됨

○ 셋째, 중국과 대만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및 접경지역 차원에서의 교류협력을 병행하였음

○ 넷째,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더욱 신장하여 경제력 차이를 더욱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ECFA 사례가 보여줌

○ 다섯째, 양안간의 '신뢰'를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쌓아왔음. 남북간에 이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임

□ 중국과 대만은 1949년 이후 민간기구 주도로 체결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였으며, ECFA를 계기로 경제교류의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양측이 체결한 모든 합의서는 체결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이행 중에 있으며, 중국 지도부의 교체 혹은 대만의 정권 교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양안간 신뢰 구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자산이 되었음

○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사항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입법조치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적절한 입법을 통해, 정권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남북 화해·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임

Ⅴ. 주요 쟁점

□ 여기서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민의 정부로부터 현재까지의 남북 경협의 경험으로부터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분석하였음

○ 정책 원칙에 관한 쟁점과 정책 현안에 관한 쟁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음

1. 역사적 기술

□ 대북정책에서 남북교류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남북경협"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맥을 같이 하며, 부정적인 평가는 "퍼주기" 논란과 맥을 같이함[13)]

□ 이명박정부의 경협정책에 대한 평가는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5.24 조치"등 강경정책으로 남북경협을 축소하고 남북경협의 최대 위기를 갖고 왔다는 평가가 병존하고 있음

□ 박근혜정부 대북정책의 키워드는 신뢰이며, 남북간의 신뢰가 확보되면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가동하겠다는 것임

○ 한반도에서의 신뢰는 우선 약속을 지키는데서 시작. 7.4남북성명, 기본합의서, 6.15 선언, 그리고 10.4선언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존중하며, 세부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실천

13) 양문수, 「남북경협의 평가와 과제」,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공동주최 세미나 자료집, p.33~38.

○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도 모색

○ 북한의 경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

○ 북한의 주요 국제금융기구 가입 및 국제투자 유치 지원

○ 궁극적으로 러시아의 동진정책에 부응하는 “유라시아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횡단철도(TC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연결

○ 유라시아대륙을 육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추진

○ 남북한의 경제 소통, 그리고 동북 3성과의 연계 등을 통해 한글 사용자 1억명을 포괄하는 규모 있는 시장의 확보

○ 박근혜정부의 남북 경협 정책의 방향은 당선인 시절부터 제시한 비전 코리아프로젝트 구상을 바탕으로 ‘신뢰’ 구축의 원칙아래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 남북경협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김대중 정부 이래 현재 박근혜정부에 이르기 까지 지속되고 있음

○ 김대중 정부의 남북경협사업의 문제점[14]은 경협의 거래 항목 구조의 변화, 경협 제도의 미비, 그리고 경협 원칙의 일관성 부족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 노무현정부의 남북경협의 문제점은 경협주체에 대한 오해 확산, ‘퍼주기식’ 경협정책, 인도적 지원과 경협의 혼재된 인식, 그리고 기업들의 도

14) 문제점에 대한 정리는 남성욱(2002), 박재민(2003), 이경호(2007), 최용섭(2002), 허태회(2001)의 연구를 종합한 것임

덕적 해이 유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15)]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남북경협 자체가 축소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경협이 차단된 측면이 있음

- 차단의 책임은 북한 정부에 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 남북한 양측 정부의 정책이 남북경협을 위축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들었음

□ 김대중정부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쟁점을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5] 역대 정부별 경협의 쟁점

	중요 쟁점	세부 쟁점
김대중정부	포용정책 시행 퍼주기 논란의 제기	남북경협의 개척자 경협제도와 경험의 부족 상호주의, 정경분리 원칙의 일관성 부족
노무현정부	남북경협의 확대 퍼주기 논란의 지속	경협주체에 대한 오해 확산 상혜 미분리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유발
이명박정부	남북경협의 정체·축소 5·24 조치를 통한 차단	일관성 있는 대북원칙의 견지 위탁가공사업 전면 차단 금강산 관광 중단
박근혜정부	남북경협 정책의 전환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개성공단의 국제화 북한 특구 진출 북한의 경제 자생력 확충

□ 김대중 정부로부터 박근혜정부에 이르기까지의 이러한 남북경협의 경험 속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들은 매우 다양하며,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

15) 권영경(2006), 고유환(2005), 김근식(2004), 김영재(2006)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임

미를 갖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 그 동안 남북경협 정책의 원칙을 둘러싼 쟁점으로는 정경분리와 정경연계 원칙의 적용, 상혜 미분리, 민관분리, 상호주의 등 다양한 원칙들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었음.

○ 또한 남북경협 정책의 현안을 둘러싼 쟁점들도 부상한 바 있는데, 남북간의 신뢰구축, 북·중경협의 확대, 남북경협과 주변국의 협력, 개성공단 생산품의 원산지 인정 등이 있음

○ 이 보고서는 기존에 논의되었던 쟁점들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쟁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나머지 쟁점들은 다른 보고서에서 다루도록 할 것임

- 정책원칙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정경분리, 민관분리, 상혜분리, 상호주의를 다루었음
- 정책현안과 관련한 쟁점으로는 첫째, 남북관계의 신뢰회복과 화해협력 기조의 유지, 둘째, 북·중경협의 확대와 남북경협의 정체, 셋째, 한반도 주변 강국과의 협력, 넷째, 개성공단 생산품의 시장 확보를 다루었음

2. 원칙

가. 신뢰프로세스의 진행

□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남북간의 관계가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에 의해 선순환 되려면 첫 출발이 중요할 것임

○ 박근혜정부는 신뢰프로세스의 큰 그림을 북한에 제시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오도록 유도할 경우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도 있음

○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뿐만 아니라 북·미 사이에도 함께 진행될 때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임. 정부도 이에 대한 정책을 천명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박근혜정부가 말하고 있는 신뢰프로세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미국이 페리보고서와 아미티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신뢰프로세스를 주도했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모두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증진하는데 반드시 필요함

나. 정 · 경분리와 정 · 경연계

□ 남북경협을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추진했던 정부는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였으며, 정경연계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온 정부는 이명박정부가 대표적임

□ 이명박정부가 정경연계정책을 채택한 것은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정·경분리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후 천안함사건, 연평도포격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 정책원칙이 더욱 확고해 졌음

□ 박근혜정부도 정경연계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를 명확히 하고 이에 입각한 남북경협정책을 입안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민 · 관분리

□ 남북경협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을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음.

○ 북한이 정부차원의 지원과 민간의 상업적인 거래를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음

○ 남한의 경우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에 개입하는 근거,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16)]

○ 다른 원칙에 비하여 이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쟁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박근혜정부는 민관분리에 앞서 선관후민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측에 당국자 접촉을 우선하도록 요구하여 관철시킨 바 있음

라. 상 · 혜분리

□ 이 원칙도 북한의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결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

○ 자본주의 핵심인 이윤추구를 기본으로 하는 상업적 거래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을 혼동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사업주체를 곤혹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었음

○ 양자간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간에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임

16) 양문수, 앞의 글, pp.44~45.

마. 상호주의

□ 상호주의는 퍼주기 논란과도 관련이 있음

○ 남북경협을 통해 북한만이 일방적인 수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남한도 경협을 통해 이득을 얻을 때 장기적인 경협이 가능할 것이며, 이의 근저에는 상호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음

- 남북경협이 국내외 정치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선 남한내의 퍼주기 논란을 해소해야 하는데, 퍼주기 논란의 핵심은 “주기만 하고 얻는 것은 없다”는 것임

3. 현안

가. 5 · 24 조치의 검토

□ 이명박 정부와 북한의 대결과 갈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경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바 있음. 특히 천안함 사태로 촉발된 5 · 24 조치의 영향으로 남북경협은 정체 혹은 축소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가 남북경협의 환경요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임

□ 남북관계는 남한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임. 이명박 정부 당시 남북관계 경색 상황은 하나의 변수만으로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남한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정책 그리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세 가지 이상의

변수들이 복합 작용하여 초래된 결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인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모색해야 할 것임. 이 세 가지 변수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전환은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신중하게 일정부분 시도되고 있음

□ 특히 남북경협을 본격화하려면 현재 시행중인 5・24 조치를 해제 하거나 최소한 완화하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임. 박근혜정부가 출범한지 1년 이내에 이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선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람직함

- 류길재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개성공단 국제화가 진전되려면 5·24 조치 등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나. 북・중경협의 확대와 남북경협의 정체

□ 5·24 조치 이후 남북경협이 정체에 머물고 있는 반면 북·중경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북·중경협의 확대에 대한 쟁점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북한 경제의 대중(對中) 종속 심화와 북한 자원에 대한 중국지배권의 강화가 있음

○ 둘째, 북·중경협이 확대되면 한국 기업의 기회가 축소될 것임

○ 셋째, 북·중경협은 경제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정치적, 국제정치적 함의를 갖고 있으며, 향후 한국주도의 한반도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임

○ 넷째, 북한을 개방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중국이 하거나 한국이 하거나 상관없으며 북한의 개방이라는 결과만 얻으면 된다는 견해도 있음

○ 남북경협이 정체되면서 북·중경협이 확대되고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 내지는 경제종속이 심화되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주장하는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의 관점에서도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다. 남북경협과 주변국의 협력

□ 한반도 주변 강국들과의 협조는 남북경협 활성화의 환경변수로 중요함. 특히 미국 및 중국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합적 환경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고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게 될 수도 있음

○ 이 현안에 대한 전략으로 "한·미동맹의 성공적인 관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한·중간 전략적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을 병행해 나가도록"[17] 주문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한·미·일 관계만큼이나 한·중관계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고,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외보안보통상관련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17) 박인휘, 「박 당선인의 4강외교에 바란다」『문화일보』, 2013년 1월 21일자.

라. 개성공단 생산품의 시장 확보

□ 현재 남북경협을 통해 생산되는 개성공단 생산품은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팔려나가지 못하고 있음. 게다가 박근혜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나선특구, 황금평 특구 등으로의 진출을 검토하고 있음

□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의 후보군인 북한의 특구지역이 향후 활성화하여 파이가 커지면 미국, EU등과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하는데 더 많은 양보를 요구받을 수 있음

○ 남북경협의 초기단계이며, 게다가 상대적으로 볼 때 침체기로서, 파이가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을 북한특구지역에 대한 원산지 인정 문제를 협의하고 풀어나갈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한·미 FTA나 한·EU FTA에서 역외가공지역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했으나 개성공단 등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이 아님[18)]

□ 개성공단 등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원산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지만 현재 상황은 협의와 의회의 승인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함

○ 우선 1단계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등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아야 함

◆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원산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한반도역외가

18) 이하 논의는 문병철, 『한·미 FTA의 주요내용과 이해』, 국회통상규범연구회, 2012, p.68을 요약한 것임

공지역위원회와 상품무역위원회를 2013년 11월 4일~5일에 한·미가 시작하였다는 것은 남북경협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라 할 수 있음

[표 6] FTA에서 개성공단 특례 비교

	한 · 싱가폴	한 · EFTA	한 · 미, 한 · EU
적용방식	ISI방식, OP방식	OP방식	위원회방식
적용조건	ISI방식: 한국에서 선적후 수출 OP방식: 역외부가가치 40%이하, 역내산 재료비 45%이상	역외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협정발효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OPZ등 구체적인 내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조건하에서 협의결정
적용품목수	ISI방식: 4,625개 OP방식: 134개	267개	
참고사항	싱가포르는 이미 북한산 제품에 무관세 적용중. 우리측 요구 수용	적용대상으로 "개성공단"을 명시하지는 않되, 개성공단 시범단지 15개 업체의 생산 예정품목을 대상품목으로 적시	위원회의 결정은 양 당사국에 권고되며, 입법적 승인을 받아야함

*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s) 방식: 실제 원산지 여하를 불문하고 당사국에서 선적되어 수출되는 일정상품에 대해서 역내산으로 인정

* OP(Outward Processing) 방식: FTA체결당사국내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다시 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상대 당사국에 수출

* OPZ (Outward Processing Zone):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의 후보군으로 개성공단을 비롯하여 북한의 경제특구지역을 지적할 수 있음

○ 북한의 경제특구가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이 세 가지가 있음

-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 둘째,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 셋째, 역외가공지역 내 일반적인 환경기준, 근로기준 및 관행, 임금관행, 영업 및 경영관행, 그 외 지역의 경제상황, 관련 국제규범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규정에 따른다면, 2013년 3월 이후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으나, 첫 번째 조건인 "한반도 비핵화 진전" 항목에서 이미 장애가 형성되어 있음

○ 그러나, 아직 남북경협이 활성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걸린 이익은 사활적이지 않음

○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경우에는 상대측의 요구사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상태에서 원산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함

○ 2단계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의 합의 도출 이후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남게 되며, 미국의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음

Ⅵ. 개선 방향

1. 단기

□ 박근혜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를 일관되게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대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5·24 조치를 둘러싼 정책검토를 진행해야 할 것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려 할 경우, 5·24 조치에 대한 정책결정은 불가피해 보임

○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했을 경우를 가정하면 '퍼주기식' 남북경협정책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잠재 가능성이 있음. 이 문제에 대한 대응논리와 설득논리를 마련하고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그간 충분히 논의된 쟁점인 남북경협의 정·경 분리 혹은 정·경 연계, 민·관분리, 그리고 상·혜분리 등의 원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 입장을 정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할 것임

○ 과거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 정책도 추진해 보았으며, 정·경연계 정책도 추진해 보았음. 이 경험을 통해 이 문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박근혜정부는 자신의 정책 입장에 따라 원칙을 정돈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경협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임

○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100% 만장일치의 의견조율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정책방향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며, 이는 신뢰프로세스 정책의 핵심이라 판단됨

2. 중기

□ 중기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의 국제화와 경협 생산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액션플랜 수립도 시작해야 할 것임

□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는 문제의 실마리는 관련국과의 외교를 통해 풀어갈 수밖에 없음

○ 첫째, 북한의 특구지역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받는 문제[19]인데, 이는 한·미간의 협조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한미 FTA의 규정에 따른다면 미국과의 협의 없이는 이 문제를 풀어낼 가능성이 매우 적음

○ 둘째, 개성공단 등 북한의 경제 특구에서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인정받도록 한·미 FTA에 특례 조항을 마련하자는 견해[20]가 있음

□ 박근혜정부가 남북경협 생산품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특히 미국과 관련된 문제들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과정이 중요함

○ 이러한 과정은 김정은 정권에게 특히 상징적이고 우호적인 신호로 간주

19) SeungHyun Lee, "Impact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Review*, vol. 4, no1, spring (2008) pp. 51-52.

20) 정범진,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2012, p. 94.

되어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할 수 있음

○ 남북경협 생산품이 미국시장으로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경협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확보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

3. 장기

□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화해협력 기조를 확보 하는 문제,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 전환 문제, 그리고 남북관계의 환경 변수라 할 수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 강화 등을 고민해야 할 것임

□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유지하는 문제,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북한특구로의 진출과 물자반입, 그리고 개성공단의 국제화 등 다양한 남북경협 현안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우호증진과 이익의 공유라는 틀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사안들을 미리 점검하고, 사전에 선제적인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외보안보통상관련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주변국과의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남북경협의 환경을 개선하고 폭을 넓힐 수 있음

○ 특히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적절히 조화·발전시킬 수 있다면 그 큰 틀 안에서 남북경협의 폭도 자연스럽게 넓혀 갈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동아시아의 “현상유지”를 자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간주하고 있

으며, 미국의 동아시아 중심전략을 중국에 대한 견제로 간주하고 있음

○ 미국은 오바마 제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으며, 그간에 준비했던 다양한 정책옵션을 풀어놓고, 재선에 대한 부담없이, 실천에 옮기려 할 가능성이 있음

Ⅶ. 맺음말

□ 남북경협의 현황과 쟁점을 분석한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결론에 도달하였음

□ 첫째, 앞으로 박근혜정부의 남북경협정책은 우선 남북간의 관계회복 혹은 신뢰회복의 단계를 거쳐야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임

□ 둘째, 남북경협이 활성화하려면 과거 정부의 '퍼주기 논란'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임

○ 역발상을 해 본다면, 박근혜정부는 퍼주기 논란을 해소하는데 유리한 국내 정치적 자원을 많이 갖고 있음

○ 퍼주기 논란을 제기했던 보수층의 압도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퍼주기 논란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서 정치적 부담이 작을 수 있음

□ 셋째,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수익을 창출·확대하려면 관련 제도를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것임

○ 현재의 정체된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남북경협 상황은 기존의 법과 제도상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대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관련법안, 통일특구[21], 그리고 평화특구[22]와 관련하여 발의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21) 황진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진하 의원 대표 발의), 2012.

22) 윤후덕,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 의원 대표 발의), 2012.

법을 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이 과정에서 제19대 국회의 남북관계 관련 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생산적인 결과 도출을 기대해 볼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박근혜정부에서의 남북경협정책은 현상유지의 힘보다는 현상타파의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박근혜정부의 남북경협 정책 전환이라는 정책의지와 한반도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소가 결합하면서 남북한 경제 분단은 '차단'의 가능성 보다는 '소통'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임

□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그간의 계기들이 축적되어 나타난 것인데, 박근혜정부의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정책에 대해 북한이 전향적으로 대응해 올 때 찾아질 것임

○ 그렇지 않을 경우 남북경협은 일정한 우여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다시 한번 얽힌 실타래가 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음

□ 박근혜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남북한경제공동체 구축이라는 남북경협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방향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단기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보임

○ 김정은 정권이 2013년 봄에 보여주었던 벼랑끝 전술과 같은 극단적인 반응이 아니라, 그간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남북경협 활성화의 속도는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참고문헌

고유환,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2년 평가와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7권 제1호, 2005.

고유환, 「문재인 후보의 남북경제연합, 한반도 평화, 신북방시대 구상」 (2012. 11. 13),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권영경, 「참여정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성과와 과제」, 『평화학 연구』, 2006.

김계동, 「차기 행정부의 통일 및 북한정책 - 주요 과제와 전망」, 『2002년 대선 평가와 차기 행정부의 과제』,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003.

김근식,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구상과 현실 그리고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16권 제1호, 2004.

김근식, 「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평가: 평화번영정책과 북핵해법을 중심으로」, 『국가경영전략』 제4집 2호, 2005.

김근식,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2012. 11. 13.

김연철, 「참여정부 대북정책 평가 및 전망」,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6호, 2004.

김영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협의 성과와 과제」, 『교통』 2007년 6월호.

김영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국제문화연구』 제24집, 2006.

김창희,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의 방향」, 『한국동북아논총 제8권 제2호, 2003.

남북협력지구지원단,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의 관련 사항」, 2010년 7월 16일.

남성욱, 「국민의 정부 대북경제 협력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통일전략』 제2권 2호, 2002.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
박재민, 「김대중 정부 시기 남북한 간 상호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손기웅, 『독일통일 20년: 현황과 교훈』,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0.
양문수, 「남북경협의 평가와 과제」,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2012.
양문수, 「한반도 평화 회복을 위한 국가전략: 개성공단 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9권 제2호, 세종연구소, 2013.
이경호, 「김대중 정부 시기 대북정책과 국가자율성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47집 1호, 2007.
이상만, 「최근 남북관계 현황과 남북 경제공동체구상: 통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구상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조경태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12.
이영훈,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북·중 경협 확장의 우려점」 『북한 경제정책 변화와 북·중 경협의 현황 및 문제점』,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종석, 「참여정부의 대북・대미정책」, 『문화일보』 2003년 6월 3일자.
이재호, 「5·24조치 이후의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KDI북한경제리뷰』, 제15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임강택, 「남북경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차이 : 활성화를 위한 해법 찾기」, 『KDI북한경제리뷰』, 한국개발연구원, 2011.
정범진, 『남북경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국회의원 조경태 의원실, 2012.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화: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국정홍보처 홈페이지 (http://www.allim.go.kr/download1/policy_data/16_President.pdf)
조동호,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성공단 사업평가」,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 유치

방안 연구』, 2012.
조봉현, 「미래지향적 신 남북경협 추진방안』, 『한반도 경제공동체구상과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조경태 주최 세미나 자료집, 2012.
조봉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남북경협 방향」 『KDI북한경제리뷰』, 제15권 제6호, 한국개발연구원, 2013.
천해성,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추진방향」,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한반도 전략』,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2013.
최대석, 「박근혜 후보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교류협력 정책을 중심으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과 전략』,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세미나, 2012. 11. 13.
최용섭,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동북아논총』 제25집, 2002.
통일부, 「남북 교류협력업체 지원 현황 및 대책」, 2010년 7월 16일.
통일부, 『월간남북교류협력 동향』, 2010.12.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추진현황』, 2003. 4.
통일부, 『평화번영정책 해설자료』, 2003. 3.
허태회,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 4년의 평가와 과제」, 『정정』 제14집, 2001.
홍순직, 「새 정부의 바람직한 남북경협 방향」 『통일경제』, 제105호, 현대경제연구원, 2013.
황부기, 「남북경협 평가와 과제」, 『남북경협 24년: 현안과 전망』, 국회부의장 박병석・국회입법조사처, 2012.
Lee, SeungHyun, "Impacts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on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n Review*, vol.4 no.1., spring, 2008.
[NARS----------

현안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호	태안기름누출사건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태세점검 및 향후대책	2007.12.18	김종연 최준영
제2호	국제지명표준화 관점에서 바라본 독도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2008. 7.31	김종연 최준영
제3호	인터넷 실명제 쟁점	2008. 8.28	김여라
제4호	한·미 방위비 분담의 현황과 쟁점	2008. 8.28	김영일 신종호
제5호	국민연금과 직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제도	2008.10. 6	원시연
제6호	2008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와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2008.10. 8	김준 외 7인
제7호	미국의 대북제재현황과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의 영향	2008.10.15	이승현
제8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2008.10.31	하혜영 외 6인
제9호	오바마시대 개막의 의의와 시사점	2008.11. 6	김준 외 7인
제10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률 검토 및 쟁점 분석	2008.12. 8	박준환
제11호	군경력 가산점제 재도입 논의의 쟁점	2008.12.10	조규범
제12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국회심의규정의 검토 및 개정 방향	2008.12.11	정민정 김남영
제13호	사이버공간에서의 이용자 보호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역할	2008.12.11	이유주
제14호	인터넷 전화와 번호이동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2008.12.11	박 철
제15호	선진국형 식품안전관리체계 마련 방안	2008.12.12	김 준 배민식
제16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논의와 주요 쟁점	2008.12.22	원시연
제17호	주식 공매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08.12.29	박충렬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8호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선 : 개별급여 방식을 중심으로	2008.12.30	유해미
제19호	국가대표선수 은퇴 후 진로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09. 1. 7	김신애
제20호	국회 및 주요국 의회의 질서유지제도	2009. 2. 6	전진영
제21호	선상투표제도 도입관련 쟁점 및 시사점	2009. 2.20	김종갑 외 3인
제22호	강제철거에서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향	2009. 2.23	조규범
제23호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도입관련 쟁점분석	2009. 4. 1	유재국
제24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일부 위헌 판결에 따른 영향분석 및 후속조치 검토	2009. 4. 1	박준환
제25호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2009. 4.14	조만수
제26호	헌법재판소 변형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입법개선방향	2009. 4.16	김선화
제27호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현황과 쟁점	2009. 5.11	정민정
제28호	영리병원 도입 논의 및 정책과제	2009. 5.15	이만우
제29호	일자리 나누기 정책의 개선과제	2009. 6. 2	정종선
제30호	LED 조명산업의 현황과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6.30	유재국 이상은
제31호	금융채무불이행자 현황 및 지원정책의 개선방향	2009. 7. 9	임동춘 주규준
제32호	존엄사 입법화의 쟁점과 과제	2009. 8.13	이만우 조규범
제33호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대책 및 개선방향	2009. 8.21	나채식
제34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응책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09. 8.21	이유주
제35호	일본의 정권교체 그 의미와 시사점	2009. 9. 3	이현출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36호	북한 황강댐 방류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2009. 9.22	정민정 김상욱
제37호	미국하원의 발언관련 규범	2009. 9.28	전진영
제38호	법률명 약칭 법제화 방안	2009. 9.28	김남영
제39호	저출산 대응 주요정책의 현황 및 과제	2009.10.15	유해미
제40호	신종플루의 대유행(Pandemic) 및 정책대응	2009.10.16	이만우 허종호
제41호	대규모 소매점에 대한 규제: 쟁점과 대안	2009.10.20	박충렬 정민정
제42호	석면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현황, 문제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2009.10.21	김 준 최준영
제43호	희유(稀有)금속자원 재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0.27	김경민 신가은
제44호	입학사정관제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언 - 미국입학사정관제의 시사점 -	2009.11.10	정환규
제45호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1.12	전진영 김선화 이현출
제46호	고령사회 대비 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의 방향성 검토	2009.11.20	원시연
제47호	방송광고판매 경쟁체제 도입과 쟁점	2009.11.27	김여라
제48호	‘7.7 DDoS 사고’ 대응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2009.12. 1	배성훈
제49호	한-인도 CEPA의 인력유입효과 제고방안	2009.12. 3	정민정
제50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09.12. 9	박영원
제51호	일・가정 양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12.10	조주은
제52호	와이브로(WiBro)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2009.12.15	김유향
제53호	수입수산물 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09.12.16	장영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54호	경찰의 주취자 보호·관리제도 개선방안	2009.12.17	하혜영 유규영
제55호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과제	2009.12.18	박준환
제56호	미국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2009.12.22	전진영
제57호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 과제	2009.12.23	전은경 이상은 김봉주
제58호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	2009.12.24	김영일 유웅조
제59호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2009.12.28	유규영 하혜영
제60호	육우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2009.12.30	배민식
제61호	고령사회 대비 주치의 제도 도입 검토	2009.12.30	이만우
제62호	프랑스 소재 외규장각 도서의 국내반환 방안	2010. 1.20	정민정 유의정
제63호	다태아 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1.28	김주경 조주은
제64호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이민정책의 개선과제	2010. 2. 1	유의정
제65호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2010. 2. 3	김 준
제66호	칠레 우파 대통령 탄생의 배경과 의미	2010. 2. 5	김영일 이현출
제67호	콘텐츠정책의 평가와 주요국 사례비교	2010. 2.10	김유향 최준영
제68호	애니메이션 산업의 현황 및 발전방향	2010. 2.11	나채식
제69호	게임콘텐츠의 현황 및 육성 방안	2010. 2.17	김신애
제70호	방송콘텐츠 현황 및 육성방안	2010. 2.22	김여라
제71호	모바일 오픈마켓을 활용한 모바일 콘텐츠시장 활성화 방안	2010. 3. 2	이유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72호	WTO/DDA 수산보조금 협상 대응방안 - 어업용 면세유를 중심으로 -	2010. 3. 3	정민정 장영주 김경민
제73호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	2010. 3. 9	전은경 유재국 김봉주
제74호	미국하원의 선물 및 여행관련 윤리규정과 우리국회에 대한 시사점	2010. 4.14	전진영
제75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인력 현황과 개선방안	2010. 5. 3	하혜영 박영원
제76호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경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 5. 3	유의정
제77호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재정 현황 및 개선방안	2010. 5. 3	이유주
제78호	지방의회의 재정 감독권 강화방안	2010. 5. 3	이정진
제79호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사체계의 개선방향	2010. 5. 3	조규범
제80호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0. 5. 3	권아영 임언선
제81호	G20 정상회의의 발전과 주요 과제	2010. 5.17	김영일 유웅조
제82호	목표인구 과다설정에 기초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의 문제점과 대응과제	2010. 5.18	장경석 유재국
제83호	아동수당제도 도입 시 쟁점 및 정책과제	2010. 5.24	유해미
제84호	2010 영국총선의 분석과 향후 전망	2010. 6. 7	김영일 이정진 김 지
제85호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대책	2010. 6.11	박준환
제86호	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	2010. 6.15	이덕난 한지호
제87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금융질서 개편 과제	2010. 6.28	원종현
제88호	고령사회에 대응한 식품산업의 과제	2010. 7.29	장영주 김봉주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89호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2010. 7.29	조주은
제90호	발암성물질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0. 8. 6	김경민 이동영
제91호	청소년 건강증진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교 보건 서비스, 행정체계 및 자원 검토-	2010. 8.25	이만우 허종호
제92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제도에 대한 검토	2010.10. 4	이건호
제93호	국가 정보보호 정책현황과 개선방안	2010.10.20	배성훈
제94호	2010년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	2010.10.21	전완희 허 원
제95호	장기미처리법률안의 해결방안	2010.10.22	정대영 김미숙 박영원 전완희 이정은
제96호	건강보험 보장성의 쟁점과 과제 -'건강보험하나로' 논의 등을 중심으로-	2010.10.25	김주경
제97호	오픈 프라이스제의 현황과 보완방안	2010.10.26	김민지 김봉주
제98호	주요국 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현황과 시사점	2010.11.16	전태희
제99호	사전투표제의 국가별 운영현황과 국내도입방향	2010.11.26	김종갑 이현출
제100호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안	2010.11.29	박충렬
제101호	도시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물순환 건전화 대책	2010.11.30	김상욱
제102호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현황과 과제	2010.12. 2	박미정
제103호	국회 인사청문제도 개선방안	2010.12.21	이현출 전진영 김선화 유재민
제104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2010.12.22	최석림 조규범 이주연 김민지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05호	한반도 통일비용의 쟁점과 과제	2010.12.23	이승현 김갑식
제106호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 및 시사점	2010.12.23	이덕난 한지호
제107호	천일염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2010.12.24	배민식
제108호	국정감사 및 조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0.12.24	최정인 김 지
제109호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정책 방안	2010.12.27	이덕난 유지연
제110호	전기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2010.12.28	김경민 박준환
제111호	원자력 발전 설비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2010.12.28	유재국
제112호	디지털시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제고 방안	2010.12.30	김여라
제113호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0.12.30	이만우
제114호	공공문서에 대한 개방된 형식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2010.12.31	배성훈 이승현
제115호	한·중·일 교역구조와 산업정책의 비교분석: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2011. 2.22	전은경
제116호	교통안전·방범활동에서 주민과 경찰간 협력강화 방안	2011. 3. 2	하혜영 권아영
제117호	자살예방대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1. 3.15	원시연
제118호	게임 셧다운제의 도입과 향후 정책 방향	2011. 5.27	조형근
제119호	주택 임대료 규제 관련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2011. 6.29	장경석
제120호	세무조사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1. 7. 1	정대영 김보례
제121호	2010년 위헌법률결정 현황과 주요 쟁점 및 입법에의 시사점	2011. 7. 1	김선화 최정인
제122호	저축은행 부실 현황 및 과제 - 정책 및 제도를 중심으로 -	2011. 7. 7	김효연
제123호	다기능 보(洑)의 적정 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 방향	2011. 7.22	김상욱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24호	모바일 유해 애플리케이션의 현황과 대응방향	2011. 8. 4	조희정 이승현
제125호	주요국의 의원연금제도	2011. 9.20	전진영
제126호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1.10.20	김경민 이동영
제127호	대학강사의 노동조건과 기대소득 분석	2011.10.21	정환규
제128호	2011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쟁점	2011.10.28	서동국 임언선 허 원
제129호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5년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중심으로	2011.11.23	장경석 박인숙
제130호	국내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정책 과제	2011.11.24	김상욱
제131호	지방의회 의정지원활동 운영실태와 향후 과제	2011.12. 6	하혜영
제132호	복수국적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2011.12.20	김선화
제133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2011.12.20	김민지 김봉주
제134호	북방한계선(NLL)문제와 대응방안	2011.12.27	정민정
제135호	군기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병 관리제도 개선방안	2011.12.28	형혁규
제136호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추진현황 및 과제	2011.12.29	김여라
제137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1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규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김 준
제138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원시연
제139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3 :「국가공무원법」상의 여성채용목표제와 양성채용목표제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박영원
제140호	입법영향분석시리즈 2011-4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입법영향분석	2011.12.30	유웅조
제141호	공공앱 현황과 발전방안	2011.12.30	조희정 이승현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42호	설비투자 부진 요인과 활성화 방안	2011.12.3.	조주현
제143호	북핵 일괄타결 협상안과 6자회담: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2. 1.25	이승현
제144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입법영향분석 -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	2012. 2.21	원종현
제145호	문화외교와 국제문화교류 부문 정책수행체계의 개선방안	2012. 3.13	김휘정
제146호	디지털 환경에서 영상물 유통 규제 개선방안: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를 중심으로	2012. 3.23	조형근
제147호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2. 3.26	김종갑
제148호	총액한도대출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2. 3.27	권순영
제149호	식품산업 산업연관분석과 정책방향	2012. 4. 6	장영주 정도영 김봉주
제150호	경전철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 4.16	김형진
제151호	IT 생태계 구조변화에 따른 IT 추진 체계 개편 방향	2012. 4.25	조주현 정도영 유재국 김민지 박영원 조희정 심우민
제152호	스마트TV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2. 5.10	조희정
제153호	실업통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2012. 5.14	박기현
제154호	국회 원구성 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2012. 5.17	전진영
제155호	「위치정보보호법」상의 동의규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 5.31	김유향 심우민
제156호	제18대 국회 입법 활동 분석	2012. 6.7	전진영
제157호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	2012. 6.15	유재국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58호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정책 현황과 개선과제	2012. 6.25	조주은
제159호	형사조정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 과제	2012. 7.13	이혜미
제160호	한강 수계관리기금 관리정책의 개선방안	2012. 8.8	김경민
제161호	선거방송의 쟁점과 개선방안	2012. 8.22	김여라
제162호	국민연금급여의 국가 지급책임과 연계한 기금운용 개선방향	2012. 8.24	원종현
제163호	교육지원청 개편 정책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2. 9.13	이덕난
제164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법제의 주요 쟁점과 입법과제: 조정을 중심으로	2012. 9.14	이건묵
제165호	보건의료 취약계층 건강 보호 정책	2012.10.12	김주경
제166호	「공직선거법」상의 SNS선거규제 조항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12.10.18	김유향 심우민
제167호	2012 미국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2012.11. 5	이정진
제168호	에너지・환경정책 관련 투자자 ISD 사례연구-바텐팔 대 독일 정부의 경우	2012.11. 8	최준영
제169호	헌법재판관 공백방지를 위한 입법개선방안	2012.11.13	김선화
제17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입 특례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1.23	김준
제171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확대 방안	2012.12. 5	한인상
제172호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2.12. 6	조주현
제173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수출효과 분석과 시사점	2012.12.26	최세중 김봉주
제174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의 주요 쟁점 및 개선방향	2012.12.27	이덕난 유지연
제175호	문화복지의 동향과 문화복지사업의 개선 방향	2012.12.28	김휘정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76호	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	2012.12.31	조형근
제177호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의 주요쟁점과 과제	2012.12.31	유의정 이덕난
제178호	MVNO 활성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2.12.31	이정윤 이승현
제179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근로시간면제제도 관련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2.12.31	한인상
제180호	「아동복지법」상 학대 피해아동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2.12.31	이여진
제181호	「의료법」 및 「약사법」 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조항의 입법영향 분석	2012.12.31.	김주경
제182호	「국회법」 개정안 중 의안자동상정제와 안건신속처리제의 입법영향분석	2013. 1. 9.	전진영
제183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복 위원회의 설치제한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2013. 1.14.	박영원
제184호	유아교육·보육과정의 통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3. 1.15.	전형진
제185호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2013. 1.18.	김갑식
제186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3. 2.19.	서동국 허 원
제187호	청년 고용현황과 정책과제	2013. 2.20.	박기현
제188호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제도 개선방안의 시뮬레이션 분석	2013. 2.26.	김종갑
제189호	국가 수자원 조사 선진화 방안	2013. 2.28.	이기하
제190호	일본 중의원 총선 결과 분석 및 자민당 정권의 주요 정책 전망	2013. 3.13.	이현출 김유정
제191호	군사법원법상 관할관·심판관제도 개선방안	2013. 4. 5.	한석현 이재일
제192호	수도권규제관련 해외정책 동향과 과제	2013. 4.17.	이창호
제193호	복지사업의 ‘중복’ 및 ‘편중’ 현황과 과제	2013. 5. 6.	이만우 김영수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194호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현황과 개선 과제 -주택의 건설기관과 관리방안을 중심으로-	2013. 7.24.	이창호
제195호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	2013. 7.29.	유제범
제196호	핀란드 초·중등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2013. 8. 5.	이덕난
제197호	법제화 커버드본드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 8.16.	김효연
제198호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	2013. 8.21.	김영일 전진영
제199호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013. 9.26.	이동영

----------NARS]

현안보고서 제200호

발 간 일	2013년 11월 7일
발 행	고현욱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TEL 02 · 788 · 4550
인 쇄	경성문화사 (TEL 02 · 786 · 2999)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005-3215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0633-14

Ⓒ 국회입법조사처, 2013

현안보고서 제200호

남북경협의 현황과 과제: 정치 · 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NARS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우)150-70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02)788-4510(代)

www.nars.go.kr

ISSN 2005-3215